#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김 윤·박홍배·강선우

전진숙 • 이수진 • 복기왕

박홍근 · 서미화 · 박민규

장종태 • 이용우 • 김남희

박수현 • 이광희 • 송재봉

이후기 • 허성무 • 박희승

김 현 · 정준호 · 손명수

박해철 · 정성호 · 남인순

임미애 • 한창민 • 박지원

홍기원 · 강유정 · 박정현

진성준 · 강준현 · 백승아

김선민 • 양부남 • 모경종

민형배 • 이기헌 의원

(389]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, 낡은 현행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 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,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 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의료직역들, 시민대표,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」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(안 제8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
- ④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"업무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
- 2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·자격에 대한 업무 조 정에 관한 사항

- 3.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4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- 5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
- 6. 제7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심의·의 결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
-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
- ⑥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제1호의 위원과 같

- 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⑦ 운영위원회는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제1호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⑧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정하거 나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.
-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·운영위원회·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	제5조(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		
수립) ① (생 략)	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8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		
	에 관한 사항		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		
	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제2항		
	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		
	제시할 수 있다.		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		
	항까지와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		
	위원회) ① 보건의료인력의 업		
	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업무		
	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		
	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		
	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		
	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"업무		
	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	
	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		

-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·자격에 대한 구 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 항
- 2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간 면허·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4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의 유 권해석에 관한 사항
- 5.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분쟁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
- 6. 제7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
-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-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 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

서 호선한다.

-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

   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

   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

   이상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
-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
- ⑥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제1호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구성하여야 한다.
- ⑦ 운영위원회는 업무조정위원

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 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제1호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⑧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서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 정하거나 업무조정위원회의 심 의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 하여 중재할 수 있다.
-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·의결한 사 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· 운영위원회·분과위원회의 구 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